

2026년 공주시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6년 공주시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6년 7월 13일

공주시장

1. 임용분야 및 인원 : 4명

근무예정 부서	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인원	주요 업무
회계과 등	청원경찰	청원경찰	4명	- 청사 방호·보안을 위한 「청원경찰법」에 따른 청원경찰 업무 - 청사 내 행사 시 주차관리, 질서유지 등 지원 - 청사 내 공무원 및 민원인 보호 - 특이민원 발생 시 대응·진압, 출동 경찰 인계 및 사건 후속처리 전반 - 경비구역 내 기타 질서유지 및 진압 활동 - 그 밖에 공주시장이 지정하는 업무

2. 보수 수준

구 분	내 용
보 수	- 기본급 월2,133,000원(1호봉, 세액공제 전) ※ '26년 경찰청장 고시금액 - 시간외근무 수당, 명절상여금, 가족수당 등 별도 - 공무원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
근무시간	- 주간 근무체제 ※ 청사 여건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, 추가근로(연장근로, 야간근로, 휴일근로)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
근무장소	공주시청(공주시 봉황로 1) 등

※ 본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
3. 임용기간

□ 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6(당연퇴직)에 따른 퇴직일 도래 시까지

※ 임용 예정일 : 2026년 10월 중 1명, 2027년 1월 중 1명, 2027년 7월 중 2명

4. 근거법령

□ 「청원경찰법」,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, 「청원경찰법 시행규칙」,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공주시 공무원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」

5. 응시 자격

□ 공통요건(기준일 : 원서접수 마감일)

○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
※ 복수 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응시 가능

○ 응시연령(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3조, 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6)

- 18세 이상인 자(2008.12.31. 이전 출생자)

-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(60세 미만)

○ 학력 및 경력 : 제한없음

○ 거주지 요건 : 공고일 전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또는 공고일 이전까지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

○ 신체조건(「청원경찰법 시행규칙」 제4조)

-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

- 시력(교정시력 포함)은 양쪽 눈이 각각 0.8 이상일 것

○ 주·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

- 최종합격 후 즉시 임용이 불가능한 사람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* 및 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6(당연퇴직)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**

○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

○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***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**
**** 청원경찰법 제10조의6(당연퇴직) 제3호**

- **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호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**청원경찰법 제10조의6(당연 퇴직)**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
3.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. 다만,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.

☐ 우대요건(기준일 : 원서접수 마감일)

구 분	적용시기	비고
① 유사업무(특수경비원, 청원경찰, 방호관련 공무원, 군사경찰) 근무경력	서류심사	각 경력 합산 적용
② 경비지도사(일반, 기계) 자격증 소지자		자격증 등급 및 소지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
③ 응급구조사(1급, 2급) 자격증 소지자		
④ 공인 무도단증(1~3단) 소지자		

- 경비지도사(일반, 기계) 자격증 소지자
 - 응급구조사(1급, 2급) 자격증 소지자
 - 무도단증(1~3단) 소지자
 - 복수로 제출한 경우 단일종목에 한하여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함
- ※ 무도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단체 : 붙임 4 응시자 참고사항 참조

-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(증) 요건이 유효하여야 하며,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된 경우는 합격이 취소됨.

- 「경비업법」 상 특수경비원, 「청원경찰법」 상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청원경찰 근무경력, 방호 관련 공무원, 군사경찰 근무경력*이 있는 자

* 군사경찰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, 사병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

- 경력은 경력(재직)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. **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(상근·비상근 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), 직위(직급) 및 담당업무(특수경비, 청원경찰 등)가 모두 명시되지 않거나,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** (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, 폐업회사 경력제출 등 필요시 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표 등 해당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)
-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,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(민법 제160조)
- 근무 경력의 인정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을 준용함
 - 전임 근무(상근): 경력의 전부 인정
 - 시간제 근무(비상근):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
 -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: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
- 폐업회사의 경우 '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(홈택스 발급 가능)'와 '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' 중 1종 제출 필수
-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, 서류 제출 이후 퇴사·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 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(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)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을 예정임

6. 시험일정

□ 응시원서 접수

- 응시원서 :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- 접수기간 : 2026. 7. 24.(금) ~ 7. 28.(화) (3일) / 근무시간 (09:00~18:00)
- 접 수 처 : 공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(본관 2층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

- ▶ 주소 : (우 32552) 충남 공주시 봉황로 1,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
- ▶ 우편접수는 마감일(2026. 7. 28.) 소인 날인분까지 유효함
- ▶ 우편접수 시는 「반신용 봉투(소)」를 함께 우송
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'등기용 우표 부착' 및 수신인 주소·성명 기재

□ 시험일정

시험공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일시	시험장소	합격자 발표
7. 13.(월)	7. 24.(금) ~ 7. 28.(화)	서류전형	-	-	8. 6.(목)
		체력검정	8. 7.(금) ~ 8. 28.(금)	국민체력100 인증센터	9. 3.(목)
		면접시험	별도	별도	별도

※ 공고 및 발표는 공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gongju.go.kr>) 시정소식-고시공고(채용공고)에 게재

※ 체력검정일, 면접시험일,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7. 시험방법

□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형식요건 및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채용공고 상 응시자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,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* 후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
- 실질심사
 - 직무수행적합평가 50점, 관련분야 실무경력 20점, 자격증 등급 및 소지 여부 30점, 가산점을 평가하여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
 - ※ 동점자 발생 시 3배수 초과할 경우 해당 동점자 모두 합격으로 결정

- 실질심사 평정요소 : 자기소개서, 우대요건, 가점사항

구분	직무수행적합도	관련분야 실무경력	자격 소지 여부	비고
배점	50점 만점	20점 만점	30점 만점	
부여 기준	탁월 : 50점	5년 이상 : 20점	경비지도사(일반, 기계) : 10점 ※ 복수 제출 시 1종만 적용	
	우수 : 45점	3년이상 5년미만 : 15점	응급구조사 1급 : 10점 응급구조사 2급 : 5점	
	보통 : 40점	2년이상 3년미만 : 10점	공인무도단증 3단 이상 : 10점 공인무도단증 2단 : 8점 공인무도단증 1단 : 6점	
	미흡 : 35점	1년이상 2년미만 : 5점	※ 복수 제출 시 유리한 1종만 적용	

- 가산점 부여 기준

분 야	배 점	우대사항 가산점
공통	5점	- 취업지원 대상자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-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- 5·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류 제20조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	3점	- 의사상자 대상자 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
	2점	- 전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- 컴퓨터활용능력, 워드프로세서, 정보처리기능사 등

□ 2차 시험 : 체력검정 ➡ 국민체력100 인증서 제출로 대체

- 체력검정대상 : 서류전형 합격자
- 체력측정기간 : 2026. 8. 7.(금) ~ 8. 28.(금)
- 체력검정방법 :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예약 후 개별 인증
※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지역별 현황 붙임 4 응시자 참고사항 참조
- 제출기한 : 8. 28.(금) 18:00까지 인증서를 전자메일(squall18@korea.kr) 제출

- 체력등급 : 체력측정 결과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하여 등급 결정

구분	인증기준	
1등급	검사항목 모두 70백분위 이상	활력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 수준
2등급	검사항목 모두 50백분위 이상	활발한 신체활동 참여에 필요한 체력 수준
3등급	검사항목 모두 30백분위 이상	최소한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체력 수준

- 합격기준 : 제출기한 내 **2등급 이상의 체력인증서를 제출** 시 합격
 - ※ 체력인증서는 반드시 체력측정기간(8. 7. ~ 8. 28.) 내 측정 결과만 인정
 - ※ 체력인증서는 8. 28.(금) 18:00까지 제출한 것만 인정
 - ※ 체력인증서 미제출 시 체력시험 불합격 처리

□ 3차 시험 : 면접시험 ➡ 적격성 심사(선발)

- 2차 시험(체력검정)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
-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 - ※ 5대 평정요소 :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 · 논리성, 예의 · 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 ·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면접시험 결과 최고 득점자를 채용 적격자로 선발
 - ※ **면접결과 공개** :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**평가결과를 종합한 상·중·하의 개수 공개**
(단, 평가요소별 상·중·하는 비공개 대상)
 - *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(의안번호 제2023-225호 / 의결 : 2023. 2. 28.)

8. 응시원서 제출 서류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(별지 제1호 서식)
- ② 응시원서 1부(별지 제2호 서식)
- ③ 이력서 1부(별지 제3호 서식)
 - ※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 첨부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)
- ④ 자기소개서 1부(별지 제4호 서식)
-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(별지 제5호 서식)
-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제6호 서식)
-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· 제공 동의서 1부(별지 제7호 서식)
-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각 1부
 -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

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필요시 별지 제8호 서식 이용)

-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·직책(직급)·담당업무·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을 구체적 명시하고, 발행기관의 발급자·연락처·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 하며,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 (근무경력기준 : 1일 8시간, 주 40시간)

※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

- 근무형태가 불규칙적(시간단위 근무 등)인 근무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

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
-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-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⑪ 자격증(면허증) 사본 1부

⑫ 주민등록표 초본(과거 주소 변동사항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1부

◆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(공고일 기준)된 것이어야 하고,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합니다.

9. 재공고 및 변경공고

- ☐ 응시자(서류전형결과 적격자)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.
- ☐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공주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.

10. 최종합격자 결정

- ☐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- 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11. 기타사항

- ☐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☐ 공주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합니다.
- ☐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.
- ☐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☐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는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 - ※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참고
- ☐ 청원경찰은 「공무원연금법」의 적용을 받습니다.
- ☐ 청원경찰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4조에 따라 영리업무가 금지되며, 청원경찰로 임용된 자가 영리·비영리 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무담당부서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.
- ☐ 기타 총괄 문의 사항은 자치행정과 인사팀(☎ 041-840-224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